금융위원회

의결 제2026-159호

1. 조치대상자의 인적사항

제재대상	내용(회사명, 성명 등)
기 관	㈜국민은행

2. 조치내용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‘특수관계인 발행 지분증권 취득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’에 대하여 ㈜국민은행에게 과태료 2,400만원을 부과

3. 조치이유

가. 지적사항

□ 기 관

1. 특수관계인 발행 지분증권 취득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

○ 「은행법」 제35조의3 제5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(특수관계인 포함)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* 또는 50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에도,

* 2020.12.31. 기준 342억원, 2021.12.31. 기준 379억원

- ㈜국민은행은 특수관계인인 A의 지분증권 50.5억원(2021.5.27.)과 B의 지분증권 97.5억원(2022.1.7.)을 각각 취득한 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(2024.6.5.~8.7. 기간중 자진하여 보고 및 공시 완료)

특수관계인 발행 지분증권 취득 관련 지연 보고·공시 내역

특수관계인	지분 취득일	보고일	공시일
A	2021. 5.27.	2024. 7.10.	2024. 8. 7.
B	2022. 1. 7.	2024. 6. 5.	2024. 7. 3.

나. 근거법규

□ 기관에 대한 조치

· 「은행법」 제35조의3 제5항, 제69조 제1항 제7호
· 「은행법 시행령」 제31조 [별표4]
·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 제20조 제1항 및 제3항